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오케이캐피탈㈜

2. 제재조치일 : 2024. 7. 2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1건, 개선사항 2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PF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

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「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」 제5조에 따르면 회사는 업종 특성·리스크 수준, 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특정산업, 기업 등에 대해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여신한도를 각각 설정·관리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취급시 향후 감축계획 등을 작성하여 그 이행상황의 점검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하지만 회사는 내규 「재무리스크관리규칙」 제7조를 통해 부동산 PF대출 한도를 설정·운영하고 있으나, 2023년 12월말 기준 회사의 PF 여신취급 규모가 허용한도를 초과(통합한도 OO.O% 초과, 브릿지대출한도 OO.O% 초과)하였음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기 현황을 보고하면서 향후 감축방안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.

한편, 2023년 12월말 기준 부동산PF 익스포져가 전체 여신성 금융자산의 OO.O%를 차지하는 등 편중이 심화되는 추세이다.

<조치할 사항>

회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져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, PF대출 편중리스크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한도 초과 시 대출구성을 다변화 하는 등 PF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개선사항

(1) PF대출 이자율 한도 위반 점검 소홀

회사 내규「대부업법이자율제한업무규칙」제7조에 따르면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등에서 정하는 이자율 한도(연 100분의 20)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을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그러나 부동산 PF대출의 경우, 취급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출만기 등을 감안한 연환산이자율을 계산하여 이자율 한도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상 연환산이자율 계산시 PF대출 수수료 수취내역을 별도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신취급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위험이 있다.

<조치할 사항>

회사는 부동산 PF대출의 취급 시 관련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자율 한도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는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이자율 한도 위반 점검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.

(2) 금융자문업무 관련 내규 마련 및 사후관리 미흡

회사 내규「부동산PF대출취급지침」제12조에 따르면 수수료 항목, 징수방법 및 수수료율 등은 내부규정 및 약정에서 정하되 건전한 금융관행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부과 내역을 명시하고 수취해야 한다.

하지만 회사는 부동산PF 대출 취급시 수수료 항목,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내규에서 정하지 않고 있어 차주에게 적용되는 이자, 수수료 등 금융조건이 투명하게 정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,

부동산PF 대출 만기연장시 금융자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약정서상 금융자문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금융자문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.

<조치할 사항>

회사는 부동산PF 대출관련 금융자문수수료 산정기준, 수취절차, 업무수행 자료의 보존 및 관리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, 만기연장을 조건으로 불필요한 자문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만기 연장시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에 금융자문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.